
『2026 국토정중앙 청춘양구 배꼽축제 홍보물 제작』

과업지시서

『2026 국토정중앙 청춘양구 배꼽축제 홍보물 제작』

과업지시서

1. 과업의 명칭: 2026 국토정중앙 청춘양구 배꼽축제 홍보물 제작

2. 과업 목적

- 적극적인 축제 홍보로 군민 및 축제 방문객에게 사전 정보 제공 안전정보 전달
- 축제기간 홍보물 게첨으로 군민 및 축제 방문객에게 효과적인 정보 전달
- 축제장 내에 게첨하여 군민과 방문객의 안전사고방지 및 정보 전달력 상승

3. 과업요청내용

가. 개요

- 1) 과업기간: 계약일로부터 9. 30.(수) 까지
 - 홍보물 제작 및 게시: 8. 3.(월) ~ 8. 21.(금)
 - 부스현수막 게시: 8. 24.(월) ~ 8. 27.(목) 까지
 - 부스현수막 철거: 9. 2.(화) 까지
 - 홍보물 철거: 9. 4.(금) 까지
 - 결과보고서 제출: 9. 30.(금) 까지
- 2) 제작사양: 과업 규격서 별첨
- 3) 제작과업: 현수막, 가로등배너, 초청장 등 제작 및 설치로 2026 국토정중앙 청춘양구 배꼽축제 홍보 효과 상승과 대형 현수막 및 안내 현수막 및 입간판으로 정보 전달 및 방문객 사고 방지

※ 지정한 용지 및 규격에 맞는 고급 인쇄

나. 과업범위

- 1) 현수막 문구 및 기타 수정사항 반영
- 2) 전체적인 레이아웃 디자인, 교정 등 디자인 관련 일체
- 3) 홍보물 설치 위치 및 일정은 재단과 협의 후 결정
- 4) 설치물에 대한 사후 관리(수거 및 폐기)

4. 과업의 준수 사항

가. 일반 사항

- 1) 담당자가 계약 후 가 편집된 원고를 과업 수행자에게 인계하면 과업수행자는 이를 편집하여 담당자의 지속적인 협의 하에 완료한다.
- 2) 최초 기획·편집이 완료되면 재단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, 편집 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차례에 걸쳐 수정·보완 및 재구성해야 하며, 납품 1주일 전에 최종 시안을 제출하여 재단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.
- 3)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과업 수행자가 제3자에게 불법·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, 계약자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- 4)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저작권 및 초상권, 특허권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직접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이와 관련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해결하여야 한다.
- 5) 과업 수행자는 2026 국토정중앙 청춘양구 배꼽축제 홍보물 제작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제작 목적과 방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의도에 부합되도록 제작한다.
- 6)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작된 지도 및 기타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재단에 귀속되며,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.
- 7)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 되었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재단과 과업 수행자가 협의하여 조정 보완한다.
- 8) 재단은 과업 수행자의 사업 추진 과정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계약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나. 보안사항

- 1)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관계자에 대한 제반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비밀에 관해서는 보안규정에 의한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.
- 3) 과업과 관련하여 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에 따른 제작물과 동일

또는 유사한 작품,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, 제작 과정에서 습득한 각종 정보자료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.

- 4) 특정인이나 특정 업체 물품에 대한 비방 또는 선전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.
- 5) 본 과업 수행 완료 후 과업 수행자가 소지한 원본 및 복사본 일체를 파기한다.

다. 과업 기간의 조정

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- 1) 과업 수행 중 재단의 요구가 있을 때
- 2)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- 3) 재단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 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
- 4) 상호 협의에의 하여 과업 기간 단축 또는 연장이 필요한 경우
- 5) 최종 인쇄 완료된 홍보물은 재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고, 재단의 필요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직접 배송 지원한다.
- 6) 과업이 완료된 후 각 홍보물의 단가, 금액 등의 산출내역서와 배송 현황을 제출한다.
- 7) 성과품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 등의 권리는 재단에 귀속된다.
- 8) 재단의 사전 동의 없이 성과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- 9) 성과품 납품 후에 발견된 제작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의 지급 없이 계약자의 책임하에 수정해야 한다.

5. 계약해지

다음과 같은 경우 재단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가. 재단의 제작 목적 및 방향과 전혀 맞지 아니할 때
- 나. 제작에 있어 재단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

- 다. 인쇄물과 관련하여 재단의 정당한 요구사항에 응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재단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은 때
- 라. 계약상대자의 부도·파산·해산·영업정지·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